

『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6월 30일

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일부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, 지급대상,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상시출장여비 지급(안 제2조)
 -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 : 월액여비 전액
 -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 :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

- 여비의 지급구분(안 제3조)
 - 시 장 :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라목 적용
 - 시장 이외 공무원 :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를 적용
- 운임 및 숙박비 지급(안 제4조)
 - 별표1 기준에 의하여 지급
-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(안 제5조)
 -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(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는 준용하지 아니함

라. 참고사항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
-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(경상북도 회계과-4401 〈2008. 4.8〉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이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(제20741호)으로 개정되었으나 공무원여비정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
-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안 제2조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시출장여비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
-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여비를 시장과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구분 지급토록 규정하였고,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시 운임과 숙박비의 기준을 정하였으며, 기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예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